

	<h2 style="margin: 0;">연구실안전관리규정</h2>	규정번호	3-1-16
		제정일자	2019.08.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수립, 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손실 방지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당기관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이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거나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9.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0.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1.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4.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직무

제4조(안전관리조직) 해당기관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로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당해 해당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책임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한다.

②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 해당기관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사항
3.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실시[별지3] 후 연구주체의장에게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별지4] 작성에 관한사항
5.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9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제공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

- 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신규 교육 일지 및 신규 채용자 교육내용 확인[별지1]과 정기·신규 교육 참석자 명단[별지1의1]을 기록 및 보관하고 복사본은 연구실책임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 한다.
 - 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 관리 한다.
 - ⑧ 안전교육·훈련 미 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기관에서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 ④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 1. [별표3]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3. [별표3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⑤ 해당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⑥ 해당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한다.
 - ⑦ 해당기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제13조(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4]에 따른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2의2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상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 가. 별표2의2의 저위험연구실

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유효기간 만료일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5], 정기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5의1]과 같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특별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시요건은 [별표6], 정밀안전진단·특별안전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6의1]과 같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제16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2%이하의 금액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기관 내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요양급여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
2.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7-1]에 따른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3.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하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4.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일시금으로 지급하며,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5. 장의비는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제6장 긴급대처방안 및 사고조사

제18조(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별표8]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며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신고서[별지2]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별표8의1]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한다.

제19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연구주체의장은 사고조사표[별지2의1]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⑧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의 발생현황을 연구실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한다.

제7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20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

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9]를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한다.

제21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10]을 실험실에 비치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으로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